

기업법률자문계약서

1. 계약 당사자의 표시

“갑” :

“을” : 변호사 김남규

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4-6 대진빌딩 7층

2. 계약의 내용

“갑” 과 “을”은 다음과 같은 기업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다.

다 음

제 1 조 (계약의 목적) 본 계약서는 “갑”이 “을”을 법률자문으로 위촉하고 “을”이 이를 수락함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.

제 2 조 (업무의 범위)

- ① “갑”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 및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반적인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
- ② “갑”의 소송, 화해, 조정, 중재 및 쟁송사건등에 관한 자문
- ③ 기타 “갑”이 의뢰하는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
- ④ “갑”의 직원들에 대한 법률상담

제 3 조 (신의성실 및 품위유지) “을”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변호사로서의 품위와 직업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, “갑”은 이에 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4 조 (법률자문의 범위)

- ① “갑”의 업무와 관련된 계약서 및 각종 법적문서에 대한 “을”명의로 검토서 작성 (연 3회)
- ② “갑”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증명(“을”명의로 발송)의 작성(연 3회)
- ③ “갑”의 업무와 관련된 유선상담 및 “갑” 직원들의 전화법률상담(횟수 제한 없이 가능)
- ④ “갑”의 업무와 관련된 변호사 방문 상담(연 5회)(단 소송의뢰와 관련된 방문과 담당자와의 상담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).
- ⑤ 인터넷을 통한 법률상담질의(횟수제한 없이 가능).

제 5 조 (자문료 및 자문시간)

- ①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본 계약 체결시 연간 자문료로 금 일백이십만원(₩1,200,000)(VAT별도)을 “을”의 계좌로 입금한다.
- ②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의뢰하는 법률 자문의 경우 방문상담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는 “을”의 업무시간이내에서 시간제한이 없으며, 방문상담은 1회 방문시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제 7 조 (소송위임 비용 및 보수)

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소송위임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비용과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의하여 별도의 소송위임약정을 체결하도록 한다.

단, 소가 2,000만원 미만인 사건을 변호사 없이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장작성대행비용을 적용하여 처리하기로 한다.

제 8 조 (비밀준수) “을”은 본 계약상 “갑”을 위한 사무처리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사업상, 재산상의 비밀을 임의로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 “갑”의 동의가 있거나,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9 조 (이해충돌의 회피)

- ① “을”은 “갑”의 동의가 없는 한 이미 “갑”이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그 직접 상대방을 대리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 이해충돌의 염려가 없거나 “갑”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어떠한 사무에 관하여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의뢰하기 전에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는 자가 이미 동일한 사건을 “을”에게 의뢰한 때에는 “을”은 “갑”으로부터의 수임을 거절할 수 있다.

제 9 조 (위촉기간 및 계약해지)

- ① 본 계약에 의한 법률자문의 위촉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. 단, 기간 만료전 1개월 이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같은 조건으로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본다.
- ② 본 계약 체결 이후 3개월 이내에 “갑”의 사정으로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분의 자문료를 반환하여준다. 3개월 이후에는 “을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.

이상의 계약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“갑” 과 “을”은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한 후 본
계약서 정본을 각 1부씩 소지한다.

※ 기업법률자문회원이 소송의뢰를 하는 경우 착수금을 할인하여 주기로 한다. 단,
사건 수입료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상호 협의하에 정하는 것으
로 한다.

2013. . .

갑 : 위임인

성명/상호 : 인 주민(법인)번호 :

주 소 :

대표번호 : 이메일 :

을 : 수임인

변호사 김남규 인

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4-6 대진빌딩 7층

TEL:(02)586-3365 FAX(02)585-8206

사이트 : www.seenlaw.com

담당자 : 국장 정현정

SEE&LAW